



2020. 11.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계획

❖ 도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추진한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계획임.

## 1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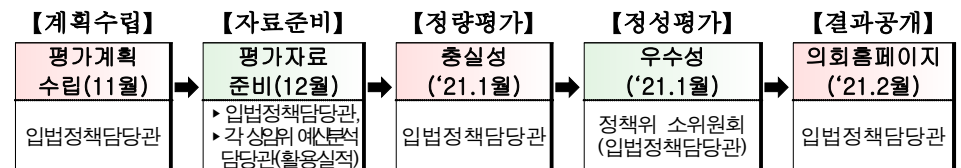
- 용역 평가로 내실있는 연구용역 수행 및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평가결과 피드백 제공 및 홈페이지 공개로 연구용역 질 향상

## 2 추진개요

- (추진근거)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입법예산정책담당관-85(2019.1.7.)]
- (평가대상)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6건
- (평가지기) 2021. 1월
- (평가방법)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정량평가 : 충실성 20점, 입법정책담당관 평가
  - 정성평가 : 우수성 80점,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서면평가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3호
- (평가내용)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 평가표 붙임

평가분야(100점)	평가항목	비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정책담당관 정량평가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 정성평가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 (공개방법)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 평가항목별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분류 공개
- (평가절차)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계획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3 세부 추진계획

#### □ 기초자료 작성

- (입법정책담당관) 정량평가 및 용역결과 보고서 준비 등
- (각 상임위 및 예산분석담당관) 연구결과의 활용실적 파악 등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 연구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 □ 정량 및 정성평가

- (정량평가) 충실성(20점)
  - 평가항목 : 용역수행 관리(10점), 용역기간 준수(10점)
  - 평가방법 : 입법정책담당관 정량평가
- (정성평가) 우수성(80점)
  - 평가항목 : 연구내용의 부합성(20점),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상적절성(20점),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20점), 연구결과의 활용 실적(20점)
  - 평가방법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소관 용역 서면 정성평가

구 분	용역명	비고 (소관부서)
제1 소위원회 (기획경제· 교육 소관)	▶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 육 위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예산분석담당관
제2 소위원회 (행정문화· 복지환경 소관)	▶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 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행 정 문 화 위
	▶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복 지 환 경 위
제3 소위원회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소관)	▶ 충남 농민기본소득(가칭) 보장 방안	농 수 산 해 양 위
	▶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안 전 건 설 소 방 위

#### □ 평가결과 공개

- (근 거)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공개방법)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21. 2월)

#### □ 소요예산

- 평가수당 : 1,800천원
  - 산출기초 : 100,000원×9명(외부 위원)×2건 = 1,800,000원
  - 예산과목 : 입법정책담당관-정책활동지원-201.01(사무관리비)

### 4 추진일정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계획 안내 : 2020년 11월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자료 작성 및 취합 : 2020년 12월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정량평가 : 2021년 1월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정성평가 : 2021년 1월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2021년 2월

- 붙임 : 1.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표 1부.  
 2.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결과서(공개용) 1부.  
 3.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현황 1부.  
 4.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1부. 끝.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표

□ 용역명 :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배점)	평가 결과	비고
합 계				
총실성 (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개최(10) * 미 개최시 1회당 감점 3점		입법정책 담당관 (정량평가)
	• 용역기한 준수(10)	계약기간 준수(10) * 지연 1일당 감점 1점		
우수성 (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① 과업지시서 대비 연구내용 부합성(10)		평가위원 (정성평가)
		② 연구범위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10)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③ 정책 방안 도출의 논리적 명료성 (10)		
		④ 정책 방안 도출의 적절성(10)		
	• 연구결과와 실현 가능성 (20)	⑤ 정책수립·집행 및 제도개선의 활용 가능성(10)		
		⑥ 정책방안의 구체성 및 창의성(10)		
• 연구결과와 활용실적(20)	⑦ 정책수립·집행 및 제도개선 실적(20)			
평가의견	* 평가위원 작성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우수성 평가 방법】

1. 평가 방법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평가

2. 평가 대상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6건)

#### 3. 평가지표 설명

- ① (연구범위 및 분석 방법의 타당성) 연구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고 적절한가?  
자료처리와 분석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이 타당한가?
- ② (과업지시서 대비 연구내용 부합성)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대로 연구결과 보고서에 명확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③ (정책 방안 도출의 논리적 명료성) 정책 방안 도출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가?
- ④ (정책 방안 도출의 적절성) 정책 방안 도출 과정이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였는가?
- ⑤ (정책 수립·집행 및 제도개선의 활용 가능성) 연구결과가 조례 제개정, 정책수립, 집행참조, 각종 제도개선, 예산확보에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
- ⑥ (정책방안의 구체성 및 창의성) 정책 방안의 내용이나 정책화를 위한 절차·수단·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결과 정책 방안이 독창적이고 선도적인가?
- ⑦ (정책수립·집행 및 제도개선 실적) 용역 결과로 조례 제개정 실적, 정책수립·집행참조 실적, 각종 제도개선 실적, 예산확보 실적 등이 있는가?

#### 4. 평가 점수 기준

○ 각 지표별 평가 점수는 등간척도에 의해 배점 부여

- ▶ ⑦번 :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4점), 미흡(12점), 불량(10점)
- ▶ ①번~⑥번: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결과서(공개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연구 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 기간	~	용역비	원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수행 관리 &lt; &gt;</li> <li>• 용역기한 준수 &lt; &gt;</li> <li>• 연구내용의 부합성 &lt; &gt;</li> <li>•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lt; &gt;</li> <li>•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 &lt; &gt;</li> <li>• 연구결과의 활용실적 &lt; &gt;</li> </ul>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소관상임위(부서)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관	용역기간
당초	변경				
계		6건	91,300		
행정자치	행정문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 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16,600	재정성과 연구원	5.7.~10.3.
문화복지	복지환경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14,400	충남연구원	5.8.~11.3.
농경환경	농수산해양	충남 농민기본소득(가칭) 보장방안	16,200	충남연구원	5.8.~11.3.
안전건설	안전건설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LPG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16,200	충남연구원	5.8.~11.3.
교육	교육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15,800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5.1.~11.29.
입법예당	예산분석 담당관	충청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12,100	충남연구원	6.3.~8.31.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시행일 :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회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를 정책위원회에 회부 심의 토록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정책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연구용역 평가)**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의장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연구 활동성적이 우수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충청남도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